

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5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의 부과·징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1호	500
나.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2호	1,000